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493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김종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철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4. 22.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506288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2022.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정한 등록체육시설인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한 자로서 체육시설법 제27조1) 제2항 제4호, 제1항에 따라 E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입회금반환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입회금 각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금반환의무가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면 그 승계는 법률상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할 것인데,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는 기존 확정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에게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족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에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E와 입회계약을 체결하였다가 E를 상대로 입회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필수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함으로써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항에 따라 E가 원고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입회금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E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나, 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소멸시효의 연장 내지 중단을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판결이 2011. 9. 7. 확정되어 시효가 이미 9년 가까이 진행되었으므로 그 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라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의 문언과 체계, 입법 연혁과 그 목적, 담보신탁의 실질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담보신탁재산으로서 이 사건 골프장 필수시설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기존 체육시설업자인 E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입회금반환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는 E의 입회금반환의무를 피고가 승계하더라도 원고들이 E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입회금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그 중요한 취지로 하고 있고, 나아가 위 법규정은 위와 같이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한다고 할 것인데, 규범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지 제재는 사법에서 일반적으로 추구되지 아니하는 법목적이어서 이를 보다 신중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50922 판결 참조),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피고에게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법정 비율은 채무자인 E와 인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채무는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확정된 입회금 각 90,000,000원 및 입회금 반환 청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6.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22. 4.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송주희, 판사 박애경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